

남 동 구
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1641호

2021년 10월 25일

월요일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- 공 고 제 2 0 2 9 호 「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 및 기 획 예 산 과 2 의견수렴
- 공 고 제 2 0 3 1 호 도시계획시설(도로: 논현동 소로1-21호선 외 2개 노선, 도 시 재 생 과 13 주차장)사업 공사완료 공고

회 람								
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동구

편집 : 대변인실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1-2029호

「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10월 25일

남 동 구 청 장**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**1. 개정이유**

-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에 대한 정원 증원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,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함

2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(안 제2조)
 - 1,292명 ⇒ 1,310명 (증 18명)
-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(안 제4조 별표 3) 일부변경

직급별 \ 기관별	총 계	본 청	의 회 사무국	직 속 기 관	사업소	동
총 계	1,292→1,310					
정무직 계	1					
구청장	1	1				
일반직 계	1,287→1,305					
2급	1	1				
4급	8	6	1	1		
5급	69	37	2	9	1	20
6급 이하 계	1,209→1,227					
별정직 계	4					
5급 상당	1	1				
6급 상당 이하 계	3					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(기획예산과장)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.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의견 보내실 곳

-(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(만수동) 남동구청 기획예산과 / ☎ 453-2052, FAX 453-2059)

-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(www.namdong.go.kr/입법예고)

4. 참고사항

○ 「지방자치법」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
○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29조

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11월 일
제 출 자 : 남 동 구 청 장

☐ 제안이유

-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에 대한 정원 증원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,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함.

☐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(안 제2조)
 - 1,292명 ⇒ 1,310명 (증 18명)
-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(안 제4조 별표 3) 일부 변경

직급별 \ 기관별	총 계	본 청	의 회 사무국	직 속 기 관	사업소	동
총 계	1,292→1,310					
정무직 계	1					
구청장	1	1				
일반직 계	1,287→1,305					
2급	1	1				
4급	8	6	1	1		
5급	69	37	2	9	1	20
6급 이하 계	1,209→1,227					
별정직 계	4					
5급 상당	1	1				
6급 상당 이하 계	3					

☐ 본 문 : “별첨”

☐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별첨”

☐ 참고자료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9조

남동구 조례 제 호

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292명”을 “1,31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269명”을 “1,282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23명”을 “28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1,292명”을 “1,310명”으로 한다.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 회 사무국	직 속 기 관	사업소	동
총 계	1,310					
정무직 계	1					
구청장	1	1				
일반직 계	1,305					
2급	1	1				
4급	8	6	1	1		
5급	69	37	2	9	1	20
6급 이하 계	1,227					
별정직 계	4					
5급 상당	1	1				
6급 상당 이하 계	3	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남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(이하 “정원” 이 라 한다)의 총수 <u>1,292명</u>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1,310명</u> ----- -----.
1. 집 행 기 관 : <u>1,269명</u>	1. ----- <u>1,282명</u>
2. 의회사무기구 : <u>23명</u>	2. ----- <u>28명</u>
3. 총 계 : <u>1,292명</u>	3. ----- <u>1,310명</u>

(별지 제2호 서식)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

- 공무원 총 정원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 비용 추가 발생

나. 관련 조문

-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

2. 비용추계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순 증 : 1,292명 → 1,310명(18명 증원)
- 2021년 예산의 직급별 인건비(기본급, 수당) 및 물건비(직급보조비) 등 적용

나. 추계 결과

- 인건비 4,825,684천원(2022년 ~ 2026년)

나. 재원조달 방안 : 구비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작성자 :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김 남 섭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계
세 입							
세 출		908,940	936,208	964,294	993,223	1,023,019	4,825,684
재원 조달		908,940	936,208	964,294	993,223	1,023,019	4,825,684
의존원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국비						
	시비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	조정교부금						
자체 수입	소 계	908,940	936,208	964,294	993,223	1,023,019	4,825,684
	지방세	908,940	936,208	964,294	993,223	1,023,019	4,825,684
	세외수입						
지 방 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※ 연도별 임금인상율은 3%로 가정함

[참고자료]

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29조(직급별 정원)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참고자료] ※ 현행 조례

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에 따라 남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남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의 총수 1,292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집행기관 : 1,269명
2. 의회사무기구 : 23명
3. 총 계 : 1,292명

제3조(정원채정기준)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제4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직렬별 정원)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그 밖의 문제점		
부서별 의견			
협의개요	부 서	제출의견	검토내용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1-2031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: 논현동 소로1-21호선 외 2개 노선, 주차장)사업 공사완료 공고

남동구 고시 제2020-146호(2020.09.17.)로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 논현동 소로1-21호선 외 2개 노선, 주차장)사업이 완료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0월 25일

남 동 구 청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

-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67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: 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)
- 명칭: 논현동 소로1-21호선, 소로1-22호선, 소로(특)3-1호선, 주차장 조성공사

3. 사업규모

- 소로1-21호선: L=36m, B=10m, A=377㎡
- 소로1-22호선: L=244m, B=10m, A=2,597㎡
- 소로(특)3-1호선: L=21m, B=4m, A=85㎡(보행자 전용도로)
- 주차장 A=1,031㎡(주차대수: 39대)

4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

- 성명: (주)디에스파트너스
- 주소: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, 301호(구월동)

5.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일

○ 2020.09.16. ~ 2021.09.14.